

제17장
제도 및 최종규정

제1절
제도규정

제17.1조
공동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.
2.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고,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장관급 공무원,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. 공동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.
3. 공동위원회는
 - 가.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.
 - 나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.
 - 다.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.
 - 라. 제15장(분쟁해결)에 따른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,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.
 - 마.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. 그리고
 - 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.
4. 공동위원회는
 - 가.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.
 - 나. 이 협정의 개정을 양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.
 - 다.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. 그리고
 - 라. 권고할 수 있다.

5.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,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,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.

제17.2조 공동위원회의 절차

1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공동위원회는
 - 가.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. 그리고
 - 나.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.
2.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대면으로,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.
3.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

제17.3조 위원회 및 작업반

1.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.
2.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의 구성, 회합의 빈도 및 기능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이 협정과 합치하게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.
3.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은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,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.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.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
4. 공동위원회는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.

제2절 최종규정

제17.4조 접촉선

1. 이 협정이 적용되는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접촉선을 수립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 기관, 그리고

나. 베트남의 경우, 산업무역부 또는 그 승계 기관

2.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계된 모든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.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에 변동이 있는 경우, 시의적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.

제17.5조 개정

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후,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.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17.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

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제17.5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
제17.7조 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17.8조 발효

1.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.

2.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제17.9조
기간

1.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.
2.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할 수 있다.
3.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7.10조
정본

이 협정은 한국어본, 베트남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. 불일치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년 월 일 에서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